

## ICC 국제공산물매매 모델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이병문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신건훈

경상국립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A Study on Main conten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ICC Model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Manufactured Goods

Byung-Mun Lee<sup>a</sup>, Shin, Gun-Hoon<sup>b</sup>

<sup>a</sup>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at Soongsi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sup>b</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ceived 31 January 2022, Revised 25 February 2022, Accepted 26 February 2022

### Abstract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Model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Manufactured Goods recently published b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2020.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ICC model contract and its main characteristics, and considers in what form the contract is composed of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by classifying it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contract, the subject and type of the trans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the main contents of the ICC model contract into special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and attempts to scrutinize details of each condition in connec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as a governing law taken by the ICC model contract. Furthermore, this study puts forward, on the basis of the detailed examination of main conditions of ICC Model Contract, practical implications on w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should be aware of when using the ICC model contract.

**Keywords:** ICC Model Contract,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pecific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JEL Classifications:** K12, K40

<sup>a</sup> First Author, E-Mail : [bmlee@ssu.ac.kr](mailto:bmlee@ssu.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 [gunhoon1@gnu.ac.kr](mailto:gunhoon1@gnu.ac.kr)

© 2022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모델계약서는 국제 상관행과 관습에 조화를 이루며 국제기구에 의해 사전에 작성되고 당사자들간 해당 거래의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거래조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Van Houtte, 2003, pp.263~264). 과거 모델계약서는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종종 사용되어왔으며 이는 동계약서가 그러한 산업군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군내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해당 산업군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상세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 산업군내 거래의 수행을 위한 전통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Van Houtte, 2003, p.254). 이러한 모델계약서는 특정산업에 국한하여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 이를 수직적인(vertical) 모델계약서의 하나라고 불리우고 있다.

한편 무역실무계에서는 특정 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계약서와 함께 이들 산업군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무역거래의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으며 거래의 유형, 예로 물품의 매매계약, 판매점 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 보편적으로 용인가능한 수평적(horizontal) 모델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Van Houtte, 2003, p.254).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간결하면서도 세부적인 기본계약을 필요로함을 인지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현행 무역 상관행과 관습 등을 반영하면서 기술의 진보에 부합하는 모델계약서를 업데이트하여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박남규, 2005, p.219). 이러한 ICC 발행 모델계약서의 가장 최신 개정판은 2020년에 발간된 것으로 이는 ICC 국제공산물매매 모델계약서(ICC Model Contract-International Sale(Manufactured Goods; 이하 ICC 모델계약서라 한다)라 한다(ICC, 2020).<sup>1)</sup> 동 모델계약서는 전 세계적으로

용인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계약표준으로서 신뢰할만한 표준 모델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그들 국제거래의 관리에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ICC, 2020, p.1).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C 모델계약서의 중요성과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동 계약서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적용범위를 계약의 목적물, 거래의 주체 및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둘째, ICC 모델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특별조건과 일반조건으로 나누어 개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계약의 당사자들이 ICC 모델계약서를 그들간 실제 계약서로 활용시 그들의 영업에 있어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ICC 모델계약서의 의의, 구성 및 적용범위

### 1. ICC 모델계약서의 의의

#### 1) 기능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조항에 개별적으로 협의의 가능한 완벽한 세계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그러한 조항을 상호 읽고, 이해하고 서명하는 맞춤형계약(custom made contract)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DiMatteo, 2016, p.44). 그러나 실제 거래 세계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계약내용과는 상이한 조항을 담고 있으면서 어느 일방당사자는 읽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서식 전쟁(battle of forms)의 문제에 종종 부딪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들 거래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방당사자가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ICC 모델계약서는 당사자들간의 선택 사항으로 여러 대안을 제공하고, 그들은 이들 대안중에 하나로 합의하면서 서로 다른 계약문제에 그들의 이해에 맞추어 나가게 할 수 있는

1) ICC 모델계약서의 이전 버전에 관한 연구로 박남규

(2005), 전순환(2002), 오세창(2001) 등이 있다.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DiMatteo, 2016, p.44).

ICC 모델계약서는 어느 당사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중립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Bortolotti, 2017, p.152). 즉 동계약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손쉽게 합의 가능한 공명정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양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며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의에 의해 그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DiMatteo, 2016, p.44).

## 2) 주요 특징

ICC 모델계약서는 그 초안의 작성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성안되었다. 첫째, 현행 무역 관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ICC 모델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델계약서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내용으로 ICC는 무역관행의 최근 변화와 기존의 확립된 관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ICC 모델계약서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개정작업을 통해 업계에 예견가능성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ICC 모델계약서는 이전 버전에 반영되어 있던 현행 관습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ICC의 새로운 작품인 Incoterms 2020과 BPO (bank payment obligation) 관련 규칙을 반영하게 되었다(ICC, 2020, p.1). 둘째, ICC 모델계약서는 최근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 양태의 하나인 디지털화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ICC는 ICC 모델계약서의 사용상 유의점을 포함한 디지털 버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상 지침의 제공과 더불어 그들이 계약조항의 모순된 선택을 한 경우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였다(ICC, 2020, p.1). 셋째, ICC 모델계약서는 업계의 사용을 의도하였고, 그 언어는 업계의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에 따라 동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짧고, 명료하며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의 직접적인 협상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 내지 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최종 계약 내용의 이행과 추후 이행의 확인을

위한 지침의 제공에 용이하도록 하였다(ICC, 2020, p.1). 마지막으로 ICC는 현행 무역 관습상 계약의 준거법으로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내법이 종종 선택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나, 무역거래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습은 국제 상거래의 글로벌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ICC, 2020, p.1). 이에 ICC 모델계약서는 준거법으로서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이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Art. 1.2(A) of Part B).

## 2. ICC 모델계약서의 구성

ICC 모델계약서는 크게 특별조건(specific conditions)과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조건은 특정 매매계약에 특별한 조건, 즉 개별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해당 계약의 특수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Part A), 일반조건은 이들 조건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 가능한 공통의 표준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Part B).

먼저 특별조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들 계약에 특별한 조항에 개별 합의할 수 있도록 허락된 부분으로, ICC 모델계약서에 제공되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취사선택하거나 빈 공간에 당사자간 개별 합의한 내용을 채워 넣어 특별조건이 완성된다. 이들 특별조건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조건 마지막 부분에는 계약체결의 장소 및 일자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과 직책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다만 ICC 모델계약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별조건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별도의 합의와 A-16조 또는 단일 또는 복수의 부속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조건은 상기 특별조건 내용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조건이 계

약에 적용되기 위해 이 부분 타방당사자에게 언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타방당사자에게 이들 조건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sup>2)</sup> 한편 ICC 모델계약서는 이들 특별조건과 일반조건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일반조항만을 이들 계약에 적용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그러한 의사를 이들 계약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Part B)상 특별조건(Part A)을 참조하도록 명시된 일부 조항은 이에 관한 당사자들간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ICC, 2020, p.2).

### 3. ICC 모델계약서의 적용범위

ICC 모델계약서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목적물, 거래의 주체 및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그 적용범위 외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거래에도 적용은 가능하되 적용범위 내의 거래에 최적화되어 고안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sup>3)</sup> ICC 모델계약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의 목적물과 관련한 적용범위로 ICC 모델계약서는 공산물(manufactured goods) 거래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ICC 모델계약서는 원자재, 농산물 또는 음식, 부패성 제품과 같은 상품에는 부적합하다. 다음으로 거래의 주체에 관련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소비자매매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동 계약서는 전문 매수인, 예를 들어, 매수인이 유통업체,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과 같이 재판매 목적의 매수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형태에 관한 적용범위로 일

회성 거래(one-off sales)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정기 내지 비정기 물품공급계약으로서 지속공급계약(continuing supply agreement)의 경우 ICC 모델계약서 적용에는 부적절하다.<sup>4)</sup>

## III. ICC 모델계약서의 주요 내용

### 1. 특별조건

#### 1) 인도조건

인도조건(delivery terms)에 관련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Incoterms 2020상 정형거래조건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정형거래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장소 또는 항구와 그러한 장소 또는 항구 내의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A-3 of Part A). 또한 Incoterms 2020상 F조건의 경우 운송수배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나, 매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선적되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한편 ICC 모델계약서의 실무작업반은 제조물의 경우 문전운송서비스(door to door transport service)를 위해 물품이 선적되거나 항구의 구역내 사용자들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ICC, 2020, p.3). 이는 특히 제조물의 경우 운송 중에 재판매되거나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에 유통성 운송서류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작업반은 EXW 조건이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에 적합한 조건에 해당하고, DD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국의 통관수속에 용

2) 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하여 이병문, 고상훈 (2017).

3) 만일 ICC 모델계약서가 당초 의도한 거래 외에 적용되는 경우(대부분 일반조건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당사자들은 그들의 거래에 동 모델계약서가 그들 거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용시 그들 거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 이에 ICC 모델계약서는 장기공급계약에 주로 등장하는 가격조정조항(price adjustment clause), 분할인도조항(instalment deliveries clause) 등과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수의 개별 매매계약을 위한 틀을 갖추는 판매점계약과 같은 거래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틀 내에서 당사자간 체결하게 되는 개별 매매계약은 ICC 모델계약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ICC, 2020, p.2).

5) 예로, FCA, FAS, FOB "Shipped by (when different from buyer) .....".

이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 조건의 선택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ICC, 2020, p.3).

이에 실무작업반은 ICC 모델계약서에 적합한 Incoterms 2020상 정형거래조건으로 FCA, CPT, CIP, DAP 또는 DPU 조건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C 모델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선택 가능한 특별조건상 정형거래조건의 나열 순서를 Incoterms 2020상의 나열 순이 아닌 이들 추천 조건을 앞서 나열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간 인도조건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상 인도조건은 FCA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조건상 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소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Art. 8 of Part B).

## 2) 인도시기

ICC 모델계약서는 계약상, 특히 당사자간 선택한 정형거래조건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 특정 일자 내지 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4 of Part A). 이러한 인도시기의 결정에 있어 유의할 부분은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 도달하는 장소와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장소가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인도시기는 인도장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CPT 조건의 경우 인도시기는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때가 아닌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ICC, 2020, p.3). 이에 당사자들은 인도시기에 관한 약정에 있어 그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그 인도시기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Art. A2 of Incoterms 2020).

인도시기는 특정일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진 경우 매도인은 동 기간내 인도시점을 정하여 물품을 인도할 권한이 부여된다(CISG Art. 33(b)).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해당 기간 내 특정 일자를 정하여 물품의 인도를 요청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다. 이는 당사자간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이 F조건군의 하나인 경우와 같이 물품의 인도

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이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Kröll, Mistelis and Viscasillas, 2018, p.464). 이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일자를 지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rt. B7 of Incoterms 2020). 이 외에도 매수인이 그의 물품 보관상 수용력에 따라 매도인의 물품인도 시점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물품의 인도기간내 물품인도의 일자를 지정할 권한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A-17 of Part A 등을 활용하여 명료히 하여야 할 것이다.

## 3) 물품의 검사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이를 선적시 또는 선적전 검사와 물품의 도착 후 검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매수인에 의한 물품검사의 시기를 선적시와 선적전 검사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검사의 장소, 비용부담자 및 검사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5 of Part A). 이러한 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전 검사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문제가 드러난 물품의 선적을 막거나 대금지급의 거절 내지 선지급 대금의 반환요청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ICC, 2020, p.6). 당사자간 선적전 검사에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합의된 장소에서 검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적전의 합리적인 시간내에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Art. 3 of Part B).

한편 물품의 도착 후 검사에 관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그 일반조항에 매수인은 물품의 도착 후 가능한 신속하게 그의 영업장소 또는 달리 합의된 검사장소에서 물품의 검사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Art. 11.1 of Part B).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간에 선적전 검사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적전 검사의 범위 밖의 문제로 선적전의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품의 부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검사는 물품이 매수인의 영업장소에서 도착 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물품의 검사 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장소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물품이 매수인의 재판대 고객에게 직접 송부 내지 운송중 재전송 되는 경우, ICC 모

텔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물품의 검사장소를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A-12 of Part A). 이는 CISG상 매수인의 검사사무가 당사자간 계약이 운송을 수반한 경우와(CISG Art. 38(2)), 운송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재전송된 경우의 검사 시기가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CISG Art. 38(3)).

다만 이들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유의할 부분은 ICC 모델계약서가 검사의 시기와 장소 및 검사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검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 계약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준거법인 CISG상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대상은 당사자간 달리 약정한 물품의 제양태(품질, 수량, 명세 및 포장의 부적합성)를(CISG Art. 35(1)) 모두 포괄할 것이고, 달리 약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물품의 통상목적 적합성, 특정목적 적합성, 샘플 내지 모델에의 적합성 및 통상적인 포장 적합성 등(CISG Art. 35(2))이 포함될 것이다(Schwenzer (ed.), 2016, pp.639-641). 한편 검사의 방법에 관하여 CISG상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CISG 제35 조상 부적합을 발견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전문성, 검사장소에서의 검사기반 등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Schwenzer (ed.), 2016, pp.641-642; Kröll, Mistelis and Viscasillas, 2018 pp.558-559). 또한 그러한 검사는 부적합성의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철저하며 완벽한 검사가 아니라 거래의 정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량의 표본검사 등과 같은 합리적인 상관행에 부합한 검사이면 충분하다(석광현, 2010, p.149).

#### 4) 소유권의 유보

ICC 모델계약서는 매수인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유보될 수 있는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A-6 of Part A). 이러한 소유권의 유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물품의 인도와 위험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또는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게 된다(Art. 7 of Part B). 다만 이러한 소유권 유보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는 국내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통상적으로 소유권 유보의 주장이 제기되는 시점에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국내법상 해당 소유권 유보 합의의 내용이 제3자에 대항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효력이 있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게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ICC, 2020, p.6).

#### 5) 결제조건

ICC 모델계약서는 대금지체에 관한 조건으로 다양한 결제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 결제 방식은 청산결제방식(payment on open account), 선급결제방식(payment in advance),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취소불능신용장방식(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취소불능은행지급확약방식(irrevocable bank payment obligation) 및 기타 결제방식을 포함하고 있다(A-7 of Part A). 다만 결제방식에 관한 당사자간 별도 서면합의가 없고 당사자간 종래 거래의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면, 대금지체는 청산결제방식에 의하되 그 결제시기는 송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제방식하의 대금지급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전신에 의한 송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금액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수령했을 때 매수인은 자신의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Art. 5.1. of Part B).

결제조건에 관한 ICC 모델계약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신용장방식과 송금방식의 대안으로 최근 그 이용빈도가 늘고 있는 은행지급확약방식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취소불능은행지급확약방식은 송금방식의 신속성과 매수인 거래은행에 의한 대금의 지급보증 기능을 겸비

한 결제방식으로,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채무은행이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수취은행에게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조건으로 약정 금액을 만기일에 지급 내지 연지급하기로 취소불능 확약하는 결제 방식이다(이방식, 박석재, 2019, p.1656). 여기서 데이터의 일치 여부는 각종 선적서류, 예를 들어, 송장, 운송서류, 통관서류 및 제 증명서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채무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에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신용장 방식의 지급보증과 종이서류의 개입 없는 결제의 유연성이 결합된 결제방식에 해당한다(ICC, 2020, p.4).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취소불능은행지급확약방식을 결제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합의된 결제방식에 따라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채무은행이 발행하는 취소불능은행지급확약의 형식으로 ICC의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의 규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보증을 매도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Art. 5.5. of Part B).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러한 지급확약에 관하여 합의된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의 최초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은행지급확약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는 일람출급(at sight)에 의하며, 환적(transshipment)은 허용하되 분할인도(partial deliveries)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Art. 5.5. of Part B).

## 6) 서류제공

ICC 모델계약서는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제공 의무에 관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및 기타 서류를 당사자간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개별 서류별로 제공 부수, 공인, 종류, 수하인, 통지당사자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8 of Part A). 다만 당사자간에 이러한 제공 서류 관련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Incoterms 2020상 적용 가능한 규칙에

서 언급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간 종래 거래과정을 고려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Art. 9 of Part B).<sup>6)</sup>

이러한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에 관하여 ICC 모델계약서의 활용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에 관한 규칙과 관습은 서류의 발행국(주로 매도인 소재의 국가)과 서류가 제시되는 국가(주로 매수인 소재의 국가)사이에서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ICC, 2020, p.4). 따라서 매수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샘플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시하거나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 전에 서류의 서식(pro forma)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매도인에게 그가 제시하게 될 서류에 관한 특정 형식 요건을 보다 명료히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당사자들은 ICC 모델계약서의 특별조건에서 지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Incoterms 2020상 규칙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그에 일치하는 해당 서류를 매도인 제공서류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ICC, 2020, p.4). 당사자들이 만일 Incoterms 2020상 규칙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변경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을 특별조건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당사자간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에 따르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관하여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ICC, 2020, p.4). 또한 당사자들은 매매계약과 동 계약에서 지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신용장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정하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sup>7)</sup> 넷째, 당사자간 서류제공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당사자간 선택한 정형거래조건에 적용되는 Incoterms 2020상 규칙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간 선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Incoterms 2020상의

6) 일반조건에는 Incoterms의 2020 버전 표시가 없으나 이는 최신 버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Art. 1.3. of Part B).

7) 이는 특히 EXW 조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에게 별도 서류제공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하다(ICC, 2020, p.4).

규칙이라 함은 ICC 모델계약서의 특별조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택한 정형거래조건을 포함하여 일반규정에서 임의로 적용되는 FCA 조건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당사자간 종래 거래과정을 고려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ICC 모델계약서상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실무상 드문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ICC 모델계약서상 특별조건에 Incoterms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 2. 일반조건

### 1)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

ICC 모델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조항을 최대한 분명히 하고자 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 내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 1.4. of Part B). 다만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방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방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 내에서 타방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Art. 1.4. of Part B).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CISG상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조항에 해당한다(CISG Art. 29(2)).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일방당사자가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변경을 허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한 일정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타방당사자는 이를 신뢰하여 비용 지불 또는 기타 계약의 이행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석광현, 2010, p.201; Schwenzler (ed.), 2016, pp.508-511; Kröll, Mistelis and Viscasillas, 2018, pp.389-390). 다만 이러한 예외에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일방당사자에 의한 행위는 계약변경에 대한 제의 내지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어떠한 추가 행위기<sup>8)</sup> 필요한

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sup>9)</sup> 또한 일방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타방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10)</sup> 이에 당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유념하여 계약상 추가 조항의 마련을 통해 이를 보다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당사자간 협력의무

ICC 모델계약서는 주로 제조물의 매매거래에 이용될 것을 의도하였고, 그러한 물품의 매매에서 제조업자는 물품의 최종소비자에게 하자의 수리 내지 대체물의 인도와 같은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업자에 의한 이러한 보증은 제조업자의 시장경쟁 차원에서 자발적인 품질보증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법에 의한 보증이 강제되기도 하는 바, 이러한 보증에 따른 제조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종종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과 중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종소비자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 법에서 요구되는 보증 내지 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된 보증에 기초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당사자들은 그들간 합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 제조업자이기도 한 매도인의 원활한 보증 처리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sup>11)</sup> 이외에도 매수인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부적합 물품의 수리 내지 대체물의 인도와 같은 보증상의 의무를 대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한다.

반대 없이 계약의 이행, 또는 변경된 계약이 일치하는 물품의 수리 등의 행위 등.

- 9) 부정설에 관하여 Schwenzler (ed.)(2016, p.509). 긍정설에 관하여 Enderlein & Maskow(1992, Art. 29, Note 4).
- 10) CISG Art. 29(2)상 합리적인 신뢰 요건이 부재하나 신의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Kröll, Mistelis and Viscasillas, 2018, p.391).
- 11) 이러한 협력의 예로는 제조업자 보증의 개시일에 해당할 수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일 확인 등이 있을 수 있다(ICC, 2020, p.6)

8) 예로 추가 협상 기간 또는 후속 서신의 교환 과정에서 계약변경에 대한 참조 표시행위, 계약변경에 대한



이에 ICC 모델계약서는 물품 또는 산업 내지 지식재산권에 관련하여 매수인의 고객 또는 제3자에 의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매도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고 있다(Art. 12.1. of Part B). 이와 더불어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조물책임이 포함될 수 있는 여하의 클레임이 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Art. 12.2. of Part B). 이와 같은 협력 의무 외에 ICC 모델계약서는 여타 협력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은 매수인의 협력의무로서 언급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일자 확인, 제조업자를 대신한 하자의 수리 내지 대체물의 인도 등과 같은 의무를 그들의 필요에 따라 ICC 모델계약서상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Part A의 A-17를 활용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책임제한

ICC 모델계약서는 국제거래의 관행에 따라 계약의 위반당사자를 상대로 피해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매수인이 입게되는 모든 손실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이해와 예견가능한 범위 내의 손해로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제품에 있어 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이해를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상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ICC, 2020, p.7). 이에 ICC 모델계약서는 책임제한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A-10, 11, A-14 of Part A) 매도인의 책임은 클레임 제기대상 물품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Arts. 10.4., 11.4. of Part B). 또한 ICC 모델계약서는 당사자들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해당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에 대한 산정공식을 두고 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연인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일반조건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공식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금(liquidated

damage)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Art. 10.2. of Part B). 한편 이러한 일반규정의 원칙이 당사자들의 거래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특별규정에 위반의 유형에 따라 달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책임제한 관련 규정은 크게 지연인도 내지 불인도의 경우와 물품 부적합성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연인도 내지 불인도의 경우, 매수인은 지연인도된 물품 가격의 5%를 최대 한도로 하여 매 시작주당 0.5% 또는 특별조건에 달리 합의한 손해배상의 예정금을(A-10 of Part A) 청구할 수 있다(Art. 10.2. of Part B). 이는 물품의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지연인도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경우 매수인은 인도 지연의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의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ICC, 2020, p.7). 한편 매수인이 지연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상기 손해배상의 예정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도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특별조건에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한도 내에서(A-11 of Part A) 입증된 손실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Art. 10.4. of Part B). 이러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매도인이 계약상 약정된 취소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매수인이 손해배상 예정금액의 최대 한도까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일자가 지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ICC, 2020, p.7). 이 경우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물품가격 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손해배상액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가능한 실제 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다(ICC, 2020, p.7).

다음으로 매도인의 인도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부적합성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해당 부적합성의 성질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Art. 10.1. of Part B).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매도인은 부적합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수리, 대체물의 인

도 또는 대금의 상환과 같은 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Art. 11.3. of Part B).<sup>12)</sup> 매도인이 이러한 선택권들 중 부적합 물품의 수리 내지 대체물 인도에 의한 하자보완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보완에 지연이 있는 경우 부적합 물품의 인도는 물품 인도의 지연으로 간주되게 된다(ICC, 2020, p.7). 이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은 물품 가격의 5% 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손해배상의 예정금을 최대한도로 하여 매 시작주당 0.5% 또는 특별조건에 달리 합의한 비율의 손해배상 예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Art. 10.2. of Part B). 한편 매도인이 일반조건상 부여된 부적합 물품의 보완을 합리적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대금 감액에 합의한 바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CISG상 부여된 구제권의 행사가 가능하다(Art. 11.4. of Part B).<sup>13)</sup> 매수인의 부적합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은 입증 가능한 매수인의 결과적 손해, 상실이익 등의 손해를 포함하며 이들 손해배상은 부적합 물품의 가격 또는 특별조건에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한도를(Art. 11.4. of Part B) 초과할 수 없다(A-14 of Part A).

ICC 모델계약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도인의 계약위반 유형으로 물품의 인도지연 내지 불인도와 부적합의 경우로 나누어 일반규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공식과 그 최대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러한 내용이 당사자간 거래에 부적합한 경우 특별규정에 달리 합의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 적용 범위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한정하며, 그 유형중 물품의 지연인도 내지 불인도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그들 거래에 있어 매수인에 의한 계약위반의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도지연 내지 불인도 및 물품 부적합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서류의

제공 의무의 위반, 권리의 하자 등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의도하고 있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간 책임제한 규정의 마련에 있어 또 다른 유의 사항으로 국내법에 따라, 특히 보통법계(Common law countries)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책임제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들 규정이 위약금 규정(penalty clause)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Schwenzer (ed.), 2016, p.1082). 이는 ICC 모델계약서상 준거법이 CISG이기는 하나 다수설에 따르면 책임제한 관련 조항의 유효성 문제는 CISG의 적용 범위 밖이기 때문이다(Schwenzer (ed.), 2016, pp.508-511; Kröll, Mistelis and Viscasillas, 2018, p.972). 이에 당사자들은 그들의 책임제한 관련 조항이 국내법에 따라 무효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4) 계약해제

ICC 모델계약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이 특별조건(A-9)에 약정된 취소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부여된다(Art. 10.1. of Part B). 매수인이 이러한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ICC 모델계약서는 계약해제 통지의 방식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에 매수인은 준거법인 CISG상 관련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지방식과 관련하여 CISG상 명시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해석상 매수인은 서면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하여도 계약해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Schwenzer (ed.), 2016, p.787). 한편 이러한 계약해제권은 약정된 취소기일까지 매도인의 물품 불인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일반조건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사유에 의한 불인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당사자간 약정된 취소기일이 존재하지 않으나 매수인이 손해배상 예정금액의 최대 한도(물품가격의

12) 이와 반면에 매수인이 부적합 물품을 수리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적합물품과 부적합 물품의 가격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13) 여기서 CISG상 부여된 구제권이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실상 계약해제권을 의미한다(Art. 11.5. of Part B).

5% 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최대 한도 (A-10))에 이르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일차 까지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이 부여된다(Art. 10.3. of Part B). 이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가 가능한 시점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해제 통지를 수령한 시점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였어야 할 기일로 부터 10주가 지난후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위해 그러한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방식은 앞서 취소기일 시까지의 물품 불인도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리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Art. 10.3. of Part B). 셋째, 매수인은 손해배상액이 예정금액의 최대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도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성을 보수하는데 실패하거나 대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Art. 11.5. of Part B). 매수인의 이러한 계약해제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도인에 의한 부적합 물품의 수리 내지 대체물 인도의 지연기간이 지연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있어 그 예정금액의 최대한도에 도달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과 지체 없이, 그리고 매수인에게 추가 비용 없이 부적합 물품을 수리하거나 대체물로 인도하여야 하나 (Art. 11.3. of Part B),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수리 내지 대체물 인도에 실패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하였어야 한다.

상기 ICC 모델계약서상 계약해제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 유형중 물품의 인도지연의 경우, 약정된 취소기한 내 불인도의 경우 및 매도인에 의해 물품 부적합성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다. 이에 계약해제가 가능한 여타 유형의 경우(예로 인도지연이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의 하자, 서류제공의무의 위반, 물품의 불인도시 추가이행기간 지정에 의한 계약해제 등)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는 준거법인 CISG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CISG Art. 49(1)). 또한 앞서 언급된 ICC 모델계약서상 계약해제권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해제 통지의 시기 및 방법에 관련하여 어떠한 명

시규정이 없기에 이 또한 CISG상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CISG Art. 49(2)).

## 5) 준거법 및 분쟁해결

ICC 모델계약서는 준거법에 관하여 동 계약에 포함된 규정(특별조건 및 일반조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CISG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 1.2. a) of Part B). 이러한 준거법 규정에 의한 CISG의 적용은 관련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의 원칙이 이러한 준거법 규정을 달리 불허하지 않는 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영업소재지가 CISG의 계약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가능하다(ICC, 2020, p.2).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부분은 ICC 모델계약서에 포함된 규정(특별조건 및 일반조건)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관련 계약에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CC 모델계약서는 그 특별조건에 일반조건에 규정된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ICC, 2020, p.2). 이는 실무상 CISG의 적용배제를 종종 접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ICC 모델계약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된 법으로서 CISG의 중요성과 당사자간 이해를 절충한 근대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CISG의 적용배제를 의도하는 당사자는 ICC 모델계약서의 활용을 지양하고 여타 모델계약서를 활용하거나 그들만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CISG 적용배제의 경우에도 그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특별조건의 A-17란에 명료히 함으로 ICC 모델계약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단순히 준거법으로서 특정국가의 법 지정만으로 CISG 적용배제의 효과를 가질 수는 없기에 그 배제 의사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Huber and Mullis, 2014, pp.62-65).<sup>14)</sup> 또한 CISG를 근간으로 한 ICC 모델계약서의 성질을 고려하

여 동 계약서상 관련 조항상의 용어 및 내용 등이 당사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준거법과 부합하도록 계약조항의 수정 등이 요청된다. 한편 ICC 모델계약서는 CISG 및 당사자간 달리 합의한 준거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Art. 1.2. b) of Part B). 만일 당사자들이 CISG의 규율 사항이 아닌 문제를 매도인 소재국가의 국내법이 아닌 여타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특별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A-15 of Part A).

계약상 발생가능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중재와 소송 중의 하나를 그들간 약정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16. of Part A).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CC 모델계약서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임의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ICC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분쟁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복수의 중재인에 의해 동 규칙에 의거 최종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Art. 14.2. of Part B). 다만 당사자들은 언제나 그들간 분쟁해결에 관한 여타 분쟁절차에 대한 침해 없이 ICC ADR 규칙에 따라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Art. 14.1. of Part B). 한편 ICC 모델계약서상 중재조항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잠정 내지 보전조치(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를 청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Art. 14.3. of Part B).

#### IV. 결론

본 논문은 그 연구목적에 따라 ICC 모델계약서의 중요성과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동 계약서의 구성 형태와 적용 범위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와 더불어 ICC 모델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특별조건과 일반조건으로 나누어 개별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계약의 당사자들이 ICC 모델계약서를 그들간 실제 계약서로 활용시 그들의 영업에 있어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에 본 결론에서는 실무자들이 ICC 모델계약서를 그들의 계약서로 활용 시, 그 유의점이 무엇인가를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ICC 모델계약서는 거래 대상으로서 공산물거래, 거래 주체로서 소비자매매 외의 거래, 거래 형태로서 일회성 거래에 최적화되어 고안된 것이다. 이에 거래 당사자들은 이들 거래에 한정하여 동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외의 거래에 ICC 모델계약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 거래에 적합하도록 ICC 모델계약서 조항의 변경 내지 별도 부속서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ICC 모델계약서는 정형거래조건들 중 당사자간의 선택지로 FCA, CPT, CIP, DAP 또는 DPU 조건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ICC 모델계약서가 주로 공산물 거래에 활용되도록 작성된 것이기에 당사자들은 운송중 재판매 내지 담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들의 정형거래조건 선택에 있어 유의를 요한다. 또한 인도시기의 설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선택한 정형거래조건상 인도장소와 연계하여 해당 시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ICC 모델계약서는 그 일반조건에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당사자간 종래 거래과정을 고려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Incoterms 2020의 규칙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ICC 모델계약서상 어떠한 경우인지 불분명하나, 이는 ICC 모델 계약서상 특별조건에 Incoterms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ICC 모델계약서상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계약변경을 허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한 일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계약변경에 대한 제의 내지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아니면 어떠한 추가 행위가 필요한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ICC 모델 계약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타방당사자의 신

14) 그 예로 계약국 중의 하나인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만으로 그 해석상 CISG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Huber and Mullis, 2014, pp.63-64).

되다 합리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고 않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유념하여 계약상 추가 조항의 마련을 통해 이를 보다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ICC 모델계약서상 책임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그 적용 범위상 물품의 지연인도 내지 불인도 및 부적합 물품인도와 같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당사자들은 이들 위반의 유형 외에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간 책임제한 조항의 마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이들 조항이 위약금 규정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기에 당사자들은 국내법에 따른 무효가

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ICC 모델계약서상 계약해제권 관련 조항과 관련하여 이는 물품의 인도지연의 경우, 약정된 취소기한 내 불인도의 경우 및 매도인에 의해 물품 부적합성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여타 매도인의 계약위반 유형의 경우와 매수인의 계약위반의 경우 계약해제는 준거법인 CISG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들 CISG 규정이 당사자간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조항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CC 모델계약서는 일부 계약해제 통지의 시기 및 방법에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규정이 없기에 실무가들은 이에 관한 CISG상 관련 규정의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 References

- Park, Nam-Kyu (2005),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English Version",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6(1), 213-261.
- Suk, Kwang Hyun, *Legal Principl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KYOUNGSA, 2010
- Oh, Se-chang (2001), "A Study on the Contents of an Agreement and a Contract Necessary i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Korea Trade Review*, 26(3), 93-125.
- Lee, Bang-sik, Park, Sukjae (2019),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of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URBPO),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5(1), 165-176.
- Lee, Byung-Mun, Sang-Hoon Ko (2017),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Korea Trade Review*, 42(2), 257-281
- Jeon, Soon-Hwan (2002), "A Study on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he Journal of Establishment Information*, 5(2), 281-307.
- DiMatteo, L. A., *International Contracting - Law and practice*, 4th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 Enderlein, F. & 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 Fabio Bortolotti, *Drafting and Negotiating: International Commerical Contracts: A Practical Guide*, ICC Publication No.788E, 2017.
- Huber, P. and A.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2<sup>nd</sup> ed.,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 2014.
- ICC, *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 ICC Publication No.811E, 2020.

Kröll, S., L. Mistelis and P. Viscasilla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Hart Publishing, 2<sup>nd</sup> ed., 2018.

Lee, Byung-Mun, “The Buyer's Duty to Examine the Goods and to Notify the Seller of Lack of Conformity under Korean Law in Comparison with the PELS and the CISG”, *Journal of Korea Trade*, Vol. 12(3), 2008.

Schwenzer, I.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4<sup>th</sup>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Van Houtte, Hans, “ICC Model Contracts”, *International Business Law Journal*, No. 3, 2003.